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13호, 2024. 2. 6. 공포, 2025. 2. 7. 시행)됨에 따라,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(안 제21조의4)
- 나.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(안 제21조의5)
- 다.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(안 제21조의6)
- 라.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 (안 제21조의7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4(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(이하 “급여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 이사 중에서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 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
 4. 보건복지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
 5.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
 6.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공단의 임직원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21조의5(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)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6(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급여심사위원회는 의결로

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7(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공단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2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4(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53조의2 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 급여심사위원회(이하 “급여심 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 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 <u>1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로 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</u> <u>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 년 이상인 자</u> <u>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 하는 자</u> <u>4. 보건복지부의 5급 이상 공무 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 명하는 자</u> <u>5.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</u>

<신 설>

<신 설>

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
6.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
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자

②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
는 2년으로 하되, 공단의 임직
원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위
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
한다.

제21조의5(급여심사위원회의 운
영 등)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
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
장이 된다.

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
명을 두되, 공단 소속 직원 중에
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
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급
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
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
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6(급여심사위원회 위원

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급여심

<신 설>

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7(급여심사위원회 위원
의 해임 및 해촉) 공단 이사장은
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
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4. 제2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회
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
	<u>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05